

◆ 송파구고시 제2026-69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) 건축범위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9호(1981.01.19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42호(2007.12.06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건축범위 결정된 신천동 20-2번지 잠실초등학교에 대하여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및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건축범위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21일

송 파 구 청 장

1.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조서

○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학교	초등학교	송파구 신천동20-2	7,146	-	7,146	서울시공고 제9호 (1981.01.19.)	잠실초

○ 건축범위 결정(변경) 조서

건폐율(%)		용적률(%)		높이(층)		비 고
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30이하	50이하	120이하	160이하	5층	5층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

○ 변경 사유서

학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서울잠실초등학교	○ 건축범위(건폐율, 용적률)변경 - 건폐율: 30%이하 → 50%이하 (증 20%) - 용적률: 120%이하 → 160%이하 (증 40%)	○ 주거시설 대량 공급으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

2. 관계도면: 별첨

※ 게재된 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147-299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고시문, 지형도면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,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게시